

## 의학전문대학원발전위원회및발전기금세칙

**제1조(목적)** 이 규정은 가천대학교 발전기금관리규정 제2조 내지 제5조 및 의학전문대학원 학칙 제47조에 따라 의학전문대학원(이하 대학원이라 한다)의 발전계획 및 운영전략과 발전기금의 조성관리에 필요한 사항의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위원회 구분)** 위원회는 의학발전위원회와 산하위원회로 의학기금위원회를 둔다.(개정 2016.05.24.)

**제3조(기능)**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및 의결한다.

①의학발전위원회

1. 대학원의 발전계획 및 전략 수립
2. 대학원 교육 및 산하기관 연구비 등의 발전에 관한 사항
3. 발전기금의 집행에 관한 사항
4. 기타 위원회에서 부의한 사항

②의학기금위원회

1. 발전기금의 설치 및 모금계획 등 조성에 관한 사항
2. 발전기금의 모금사업을 위해 필요한 기타 사항
3. 기타 위원회에 부의한 사항

③(삭제 2016.05.24.)

**제4조(구성)** ①각 위원회에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두며, 1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, 임기는 2년으로 한다. 각 위원은 연임할 수 있다. 또한 의학발전위원회에는 의결권을 갖지 않는 글로벌캠퍼스 부총장, 의무부총장, 메디컬캠퍼스 부총장, 가천대길병원 병원장으로 구성하는 당연직 고문을 두고, 의학기금위원회에는 학부모대표와 의대졸업동문대표를 당연직 위원으로 둔다.(개정 2016.05.24.)

②의학발전위원회의 위원장은 의학전문대학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하며, 산하위원회의 위원장과 각 부위원장 및 위원은 의학발전위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.(개정 2016.05.24.)

③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해 간사를 둘 수 있다.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 보관한다.

## 2-3-19~2 제2편 학 칙

**제5조(회의)** ①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

②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**제6조(발전기금의 사용)** 발전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한하여 사용하되, 지정 및 특별목적발전기금의 사용은 기부자의 의지에 따른다.

1. 대학원 학생 및 교원의 교육지원 및 대외 교류지원, 연구지원, 대학원의 시설확충 소요 경비
2. 의학발전위원회가 인정하는 전문 인력 양성에 소요되는 경비
3. 대학원의 산하 연구기관 연구비
4. 기타 의학발전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의결한 사항

**제7조(준용)**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기금관리에 관한 사항은 발전기금관리규정과 발전기금유치공로자예우시행세칙을 준용한다.

**제8조(보칙)** 발전기금관리규정과 발전기금유치공로자예우시행세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얻어 시행한다.

#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세칙은 2014년 06월 0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규정) ①이 세칙 시행일 이전의 의학전문대학원발전위원회 운영세칙, 의학전문대학원발전기금운영규정은 폐지한다.

②이 규정 시행일 이전 의학전문대학원 발전을 위해 모금된 기금은 특별하게 지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의학발전기금으로 이관한다.

### 부 칙

이 세칙은 2016년 05월 24일부터 시행한다.